定款

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

정 관

제정 2012년 9월 1일 정관 제 1 호 개정 2015년 3월 27일 정관 제 2 호 개정 2019년 3월 28일 정관 제 3 호 개정 2020년 3월 27일 정관 제 4 호 개정 2021년 3월 30일 정관 제 5 호 개정 2025년 3월 28일 정관 제 6 호

제 1 장 총 칙

제1 조(상호)

본 회사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라 칭한다. 영문으로는 HANKOOK TIRE & TECHNOLOGY CO., LTD.라 표기한다. 단, 본 상호 변경의 효력은 2019 년 5월 8일부터 발생한다. (정관 제 3호)

제 2 조(목적)

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1. 자동차 타이어, 튜브 및 동 부속품의 제조, 재생, 가공 및 판매업
- 2. 고무제품 및 특수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
- 3. 각종 타이어 및 기타고무제품 제조에 관한 기술용역업
- 4. 축전지 제조 및 판매업
- 5.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및 판매업
- 6. 자동차 정비 점검 및 수리업
- 7. 기계, 산업설비류 및 기타부품류 제조, 조립, 장비 임대 및 판매업
- 8. 주택사업, 주거용 건물 분양 공급 및 임대업
- 9. 부동산 개발, 매매 및 임대업
- 10. 운수, 운수관련 서비스업 및 보관, 창고업
- 11. 수출입 및 도소매업
- 12. 신소재 및 비금속제품 제조 및 판매업
- 13. 운수장비 및 기타부품의 제조, 조립 및 판매업
- 14.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
- 15. 주유소 사업
- 16. 교육서비스업
- 17. 인터넷 및 정보통신업
- 18. 체육시설업, 골프장업 및 종합레저사업
- 19.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,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사업관련 서비스업

- 20. 전자상거래 및 관련 서비스업
- 21. 연료전지용 분리판 및 부품류 개발, 제조, 판매, 연구용역업
- 22. 고무제품 렌탈임대업 (정관 제 3 호)
- 23. 방문판매, 통신판매 및 이에 부대되는 서비스업 (정관 제 3호)
- 24. 자동차 경주장 및 주행 체험장 운영 등 스포츠서비스업 (정관 제 4 호)
- 25.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

제 3 조(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)

- ① 본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성남시에 둔다. 단, 본 본점의 소재지 변경의 효력은 2020 년 4월 20일부터 발생한다. (정관 제 4호)
-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, 영업소, 사무소, 현지법인, 작업소 및 공장을 둘 수 있다.

제 4 조(공고방법)

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www.hankooktire.com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"서울경제신문"에 게재한다.

제 2 장 주 식

제 5 조(발행예정주식의 총수)

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억 5천만주로 한다.

제 6 조(일주의 금액)

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백원으로 한다.

제 7 조(주식의 종류)

-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.
-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,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, 상환주식,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.

제 8 조(종류주식의 수와 내용)

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로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.(정관 제 2호)

- ① 본 회사는 종류주식의 하나로서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(이하 "우선주식")을 발행할 수 있다. 우선주식은 주주총회에서의 모든 결의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.(정관 제 2 호)
-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5% 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배당한다.
- ③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종류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.
-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.
- ⑤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, 우선주식에 배정하는 신주는 이사회가 결의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할 수도 있고 우선주식 또는 정관이 정하는 다른 종류주식으로 할 수도 있다. (정관 제 2 호)

제 9 조(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

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 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 (정관 3 호)

제 10 조(신주인수권)

-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
 - 1.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
 - 2.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- 3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
 - 4. 상법 제 340 조의 2 및 제 542 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- 5.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(DR)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- 6.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- 7.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생산, 판매 등의 제휴회사에게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- ③ 제 2 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조 제 1호, 제 2호, 제 2호의 2, 제 3호 및 제 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.

- ④ 제 2 항 제 1 호, 제 2 호, 제 5 호, 제 6 호 및 제 7 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.
-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
제 11 조(주식매수선택권)

- ① 회사는 임·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 340 조의 2 및 제 542 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.
-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·경영과 해외영업 및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 할 수 있는 임·직원 및 상법 시행령 제 9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·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
 - 1. 최대주주(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5 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그 특수관계인(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5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. 다만, 당해 법인의 임원(상법 시행령 제 9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)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(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)는 제외한다.
 - 2. 주요주주(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6 호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그 특수관계인. 다만, 당해 법인의 임원(상법 시행령 제 9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)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(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)는 제외한다.

- 3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
-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(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되는 주식을 말한다)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.
-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·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·직원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할 수 없고,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- 1.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
 - 가.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 조의 7 제 2 항 제 1 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
 - 나. 당해 주식의 권면액
 - 2.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
-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 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.
-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⑧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

- 1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·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
- 2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·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
- 3.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
- 4.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 12 조(동등배당)

본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(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)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. (정관 제 5 호)

제 13 조(명의개서대리인)

-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.
- ②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 (정관 제 3 호)
- ③ 제2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. (정관 제 5 호)

제 14 조 (삭제) (정관 제 3 호)

제 15 조(기준일)

- ① 본 회사는 매년 12 월 31 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
- ②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

있으며,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 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(정관 제 5 호)

제 3 장 사 채

제 16 조 (사채의 발행)

-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 16 조의 2 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
제 13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 (정관 제 3 호)

제 17 조(전환사채의 발행)

-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8,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 - 1.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
 - 2.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- 3.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- 4. 위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- 5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- 6. 기타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- ②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.

-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이사회가 정한다.
-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. (정관 제 5 호)

제 18 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

-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8,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 - 1.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
 - 2.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- 3.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- 4. 위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- 5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- 6. 기타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-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.
-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.

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18 조의 2 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

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 다만,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. (정관 제 5호)

제 4 장 주주총회

제 19 조(소집시기)

-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.
-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 월이내에,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
제 20 조(소집권자)

-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.
- ② 대표이사 유고시는 제 23 조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21 조(소집통지 및 공고)

-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,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총회일 2 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"한국경제신문" 및 "서울경제신문"에 2 회 이상

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

제 22 조(소집지)

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공장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

제 23 조(의장)

-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- ② 대표이사 유고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24 조(의장의 질서유지권)

- ① 주주총회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,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② 주주총회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 25 조(주주의 의결권)

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.

제 26 조(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)

본회사,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.

제 27 조(의결권의 불통일행사)

-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때에는 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한다.
-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.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28 조(의결권의 대리행사)

-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9 조(주주총회의 결의방법)

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및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.

제 30 조(삭제) (정관 제 6 호)

제 31 조(주주총회의 의사록)

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,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 회사에 비치한다.

제 5 장 이사·이사회

제 32 조(이사의 수)

① 본 회사의 이사는 3 명 이상 15 명 이내로 하고,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한다.

② 사외이사의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 1 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. (정관 제 3 호)

제 33 조(이사의 선임)

-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의 선임시 상법 제382조의 2에서 정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 34 조(사외이사 후보의 추천)

-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.
-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 35 조(이사의 임기)

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며, 재선될 수 있다.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

제 36 조(이사의 보선)

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정관 제 32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② 사외이사가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 32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37 조(대표이사 등의 선임)

-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. (정관 제 6 호)
- ② 회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.(정관 제 6 호)

제 38 조(이사의 직무)

-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,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 (정관 제 5 호)

제 39 조(이사의 보고의무)

-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40 조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)

-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.
-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이사가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.

제 41 조(이사회의 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 398 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 42 조(이사회의 의사록)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43 조(위원회)

-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위원회를 둔다.
 - 1. 감사위원회
 - 2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
 - 3. 경영위원회 (정관 제 7 호)
 - 4. 내부거래위원회
 - 5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(정관 제 5 호)
- ②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-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40 조, 제 41 조 및 제 4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44 조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

-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.
- ②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.

제 45 조(상담역 및 고문)

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담역 및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.

제 6 장 감사위원회

제 46 조 (감사위원회의 구성)

- ①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43 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.
- ②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,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 조의 10 제 2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 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 (정관 제 5 호)
-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 (정관 제 5 호)
-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 - ⑥사외이사의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. (정관 제 3 호)

제 47 조(감사위원회의 직무)

①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
-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대표이사(소집권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제 2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-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. (정관 제 3 호)
- ⑦ 감사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6 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
제 48 조 (감사록)

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7 장 계 산

제 49 조(회계년도)

본 회사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.

제 50 조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·비치 등)

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,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대차대조표
- 2. 손익계산서
- 3.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
- ② 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.
-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의 1 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제 1 항에 불구하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.
 - 1. 제 1 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
 - 2.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
- ⑤ 제 4 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⑥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전부터 본사에 5 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
- ①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 4 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51 조(외부감사인의 선임)

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,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(정관 제 3 호)

제 52 조(이익금의 처분)

본 회사는 매 사업년도 이익금(이월이익잉여금포함)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

- 1. 이익준비금(상법상의 이익준비금)
- 2. 기타의 법정적립금
- 3. 배당금
- 4. 임의적립금
- 5.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
- 6. 차기이월이익잉여금

제 52 조의 2 (준비금의 자본전입)

회사가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에 따라, 보통주식에 보통주식외의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배정할 수 있고,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할 신주를 보통주식 외의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, 우선주식에 배정할 신주를 우선주식 또는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이 아닌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. (정관 제 2 호)

제 53 조(이익배당)

-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,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.
-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배당하는 주식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, 그와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 또는 정관에 근거가 있는 그와 다른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다. (정관 제 2호)
- ③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,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(정관 제 6 호)

제 53 조의 2(중간배당)

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 462 조의 3 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. (정관 제 7 호)

-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,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(정관 제 7호)
-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. (정관 제 7 호)
 - 1.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
 - 2.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
 - 3.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
 - 4.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
 - 5.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
 - 6.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

제 54 조(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)

-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-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.

- 1. (시행일) 본 정관은 회사가 설립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2. (세칙제정)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.
- 3. (적용범위) 본 정관의 규정에 없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의사록에 의하고, 의사록에 없는 사항은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다.
- 4. (분할에 의한 회사 설립) 이 회사는 한국타이어 주식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며, 동 분할로 인하여 이 회사에 이전되는 재산 및 그 가액 등에 대하여서는 2012 년 7 월 27 일자 한국타이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.
- 5. (사업년도에 관한 특례) 본 회사의 최초 사업년도는 제 49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설립일로부터 2012 년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.
- 6. (발기인) 이 회사는 한국타이어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타이어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설립된 회사이다. 이에 따라 이회사의 발기인은 존재하지 아니한다.
- 7. (분할 전 회사의 명칭과 주소) 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, 분할 전 한국타이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.
- 8. 본 정관은 2019 년 3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 1 조는 2019 년 5 월 8 일부터, 제 9 조, 제 13 조, 제 14 조, 제 16 조의 2 및 제 18 조의 2 개정 내용은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」이 시행되는 2019 년 9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. (정관 제 3 호)
- 9. 본 정관은 2021 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(정관 제 5호)
- 10. 본 정관은 2025 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 (정관 제 7호)